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77 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정준호·김재원·권칠승

복기왕 • 이학영 • 김태년

박용갑 • 김태선 • 임호선

윤후덕 • 박희승 • 정성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.

그러나 체포·언론·집회·결사의 제한 등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의 일반적 지휘·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

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후단 중 "공고하여야 한다"를 "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계엄사령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	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		
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	①		
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			
포・구금(拘禁)・압수・수색・			
거주・이전・언론・출판・집회			
•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			
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		
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			
내용을 미리 <u>공고하여야 한다</u> .	<u>공</u> 고하고 지체 없		
	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		
	고하여야 한다.		
<u><신 설></u>	② 계엄사령관은 국회 소관 상		
	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특별		
	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		
	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고		
	공고하여야 한다.		
<u>②</u> ~ <u>④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		
	항까지와 같음)		